법을 규제력있게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리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법은 모든 공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인민정권활동의 기본무기입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7권 241폐지)

법은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활동에 대한 규제력이 있어야 한다. 규제력이 없는 법은 사실상 법이라고 할수 없다.

법의 규제력은 법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하는것과도 관련되지만 그보다 먼저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법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법이 사람들의 사회생활과활동에 대한 규제력을 가질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때문에 법은 규제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현시기 법을 규제력있게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들고 제재규범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법의 통제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틈을 주지 않으며 부문 기본법들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구체적으 로 만들어 부문법체계를 완비하는것이다.

법을 규제력있게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첫째로,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드는것이다.

법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법문건에서 형상적인 표현이나 과장수법을 사용하거나 지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법이 행동준칙으로 될수 없다. 이런 법문건은 명색은 법이지만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힘을 가질수 없다.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빠짐없이 명확히 밝히는것이다.

법규범은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의 형식으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다. 법적권리와 의무는 그것을 지니는 당사자가 있으며 일정한 대상과의 관계속에서 설정된다. 때문에 법 규범은 법적권리의무와 함께 그 당사자와 대상도 규제한다.

법규범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준수가 담보되므로 법적제재를 자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당사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법적권리의무를 지거나 법적제재를 받는다. 그러므로 법규범은 당사자가 법적권리의무나 법적제재를 지게 되는 조건과 환경(법률사실)을 자기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한다.

법규범이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내용으로 하는것만큼 법조문에서 이것들을 빠짐없이 명확히 밝혀야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들수 있다.

우선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빠짐없이 규제하여야 한다.

실례로 어떤 법조문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수를 받은 다음 검수료금을 물지 않거나 창고에 보관한 화물을 정해진 기일안으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한 연체료를

적용한다고 서술하였다면 여기서는 연체료를 적용할 권한을 가진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것을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연체료를 적용할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으면 연체료적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그 법조문은 규제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법조문에서 법적권리와 의 무, 당사자와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빠짐없이 서술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또한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명확히 규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권리와 의무, 당사자, 대상, 법적제재, 법률사실을 서술하는데 반 드시 필요한 표현만을 사용하는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각칙조문에서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야 한다.》,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야 한다.》라고 서술하면 이런 수식어들은 법적의무를 표현하는 데 적합치 않다. 법적의무를 서술하면서 우와 같은 형상적인 표현을 쓰면 적법행위와 위 법행위를 판단하기 힘들다. 법규범은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구체 적인 행동준칙이므로 법조문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정황에서 집행할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이 적법인가 위법인가를 평가할수 있게 작성되여야 한다.

법문건은 법적권리와 의무, 법적제재를 알려주기 위한 글이지 군중의 심장을 울리고 그들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글이 아니다. 때문에 법조문에서는 선동적인 표현들과 형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드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행동의 기준을 확정적이며 구체적으로 표현하는것이다.

정강을 비롯한 정치적문건은 정치적목적과 요구, 그 실현방도를 론리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표현한다. 그러나 법은 정치적목적과 요구를 확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 규범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법조문은 될수록 확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례로 법조문을 작성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제재를 준다.》, 《질 서를 어긴 경우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와 같이 두리뭉실하게 서술한다면 법을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적용하기 힘들며 사람마다 제멋대로 해석할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행동준칙의 확정성, 구체성보장과 관련하여 행동준칙의 일반성과 모호성의 차이점, 행동준칙의 일반성과 구체성의 관계를 바로 리해하는것이 중요하다.

행동준칙의 일반성을 보장한다는것은 누구나 다 지킬수 있게 그리고 같은 성질의 사건에 반복적용할수 있게 작성한다는것이다. 행동준칙이 모호하다는것은 행동준칙의 내용이 흐릿하여 똑똑하지 않다는것이다. 이처럼 행동준칙의 일반성과 모호성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때문에 행동준칙의 일반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행동준칙의 내용을 모호하게 또는 두리뭉실하게 서술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법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할 일반적인 행동준칙인 동시에 확정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준칙이다. 그러므로 법조문을 작성할 때 행동준칙의 일반성을 보장하면서도 행동준칙의 확정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의 확정성과 구체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모호한 다시말하여 내용을 똑똑히 알수 없는 그런 행동준칙은 규제력이 없으며 사실상 행동준칙이 아니다.

법을 규제력있게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둘째로, 제재규범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법의 통제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위법현상은 낡은 사상잔재에 바탕을 두고있는것만큼 준법교양과 사상투쟁만으로 없앨수 없으며 법위반자들에게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법위반자들에 게 제재를 철저히 가하여야 그들로 하여금 법을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단위들 에서 법질서를 철저히 세울수 있다.

법위반자들에게 제재를 철저히 가하자면 법을 만들면서 제재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고도 법의 통제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틈을 찾게 되며 결국 법질서가 문란해진다.

제재규범을 구체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법적제재를 가하는 당사자와 대상,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경우, 법적제재의 종류와 량, 법적제재에 대한 신소나 상소, 강제조치를 밝 히는것이다.

법적제재를 가하자면 누가 어떤 경우에 누구에게 어떤 제재를 얼마만큼 가하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제재를 서술할 때에는 법적제재를 가하는 당사자와 대상, 법적제재를 가하는 경우, 법적제재의 종류와 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형벌은 언제나 재판기관이 적용하는것이므로 형벌과 관련한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형벌적용기관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처벌은 종류가 많고 적용기관도 각이하므로 행정처벌과 관련한 조문을 작성할 때에는 행정처벌을 가하는 경우와 대상, 행 정처벌의 종류와 량뿐아니라 행정처벌을 주는 기관을 명백히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법적제재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에게 신소 또는 상소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밝히는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밝혀야 법적제재를 부당하게 가하는 현상을 없애고 인 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당과 정권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두터이 할수 있다.

법적책임추궁이 방해되는 경우 누가 어떤 강제조치를 취하는가 하는것도 밝히는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행정처벌과 관련한 조문을 작성하는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 벌금, 영업 중지, 변상, 몰수와 같은 행정처벌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불복하 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법에 따라 정당하게 가해지는 제재에 불복하는 이런 현 상들을 그대로 놔두면 법은 지상공문으로 되게 된다. 때문에 법에 따라 정당하게 가해지 는 제재에 불복하는 경우 누가 어떤 강제조치를 취하는가를 명확히 밝히는것이 사회주의 법의 준수를 권력적으로 철저히 담보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견지에서 필요하다.

제재규범을 구체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위법행위의 형태와 엄중성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법적제재를 구체적으로 맞물려주는것이다.

법규범은 일정한 조건과 환경속에서 당사자들이 지닐 법적권리와 의무와 함께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지게 되는 법적제재를 자기의 내용으로 한다. 일정한 법적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초래되는 법적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그러한 법규범은 온전한 법규범이 못되며 이런 경우 법적의무의 리행은 국가권력의 실제적인 담보를 받지 못하게 된다.

법적의무의 불리행이 법적제재를 산생시키는 원인으로 되므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법적의무를 철저히 리행하도록 하자면 모든 법적의무들에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 초래되게 되는 법적제재가 대응되여야 한다.

법적의무와 법적제재의 대응은 구체적으로 의무부과조문과 법적제재조문의 대응으로

표현된다.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않는것이 법적책임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에서 권리부여조 문과 법적제재사이에는 대응관계가 설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의무의 불리행은 법적제 재를 산생시키는 원인으로 되는것만큼 모든 의무부과조문들에는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초래되는 법적제재를 규정한 조문들을 대응시켜야 한다.

이처럼 모든 법적의무들과 법적제재가 대응되도록 제재규정부분을 작성하는것은 법을 규제력있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제재규범을 구체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의무부과조문의 성질과 법적제재의 성 질이 적응되도록 하는것이다.

어떤 법문건에 의무부과조문이 수십개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법을 위반하는 행위도 수십가지라고 할수 있다. 이 수십가지의 위법행위들은 성질에 따라 범죄행위, 행정적위법 행위, 민사적위법행위로 구분할수 있다.

위법행위의 성질이 다르면 그로부터 산생되는 법적제재의 종류와 량도 달라진다. 때문에 의무부과조문들을 성질에 따라 일정한 부류로 구분하고 부류별로 묶어서 각이한 종류의 법적제재들과 대응시켜야 한다. 다시말하여 법을 위반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때에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벌을 가하도록 규제하며 행정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응되는 행정처벌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법을 규제력있게 만드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셋째로, 부문법체계들을 완비하는 것이다.

법체계는 헌법과 그에 기초한 부문법들의 통일체이며 매개 부문법들자체도 일종의체계이다.

부문법체계들을 완비하여 법의 규제력을 더욱 강화하자면 모든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며 부문별로 부문기본법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과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문법체계를 완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모든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 법제정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여 사회주의헌법과 수백개의 법과 규정들이 제정되고 공화국의 법체계가 기본적인 틀거리를 갖추었다. 한편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새로운 력사적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 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에 날마다 기적과 혁신을 창조 하며 만리마속도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법의 규제력을 강화하자 면 이미 있는 법규범과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할것은 수정하고 보충할것은 보충하는것이 필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과 현행당정책을 자로 하여 이미 있는 법규 범과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보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정, 보충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 및 국방분야를 규제하는 법규범과 규정들,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는것 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 과학기술 및 교육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따져보고 수정, 보충하는것이 중요하다.

부문법체계를 완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부문기본법들을 정책적으로 잘 만

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과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드는것이다.

우선 부문기본법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법체계에 기본법이 있는것처럼 부문법체계에도 기본법이 있다.

실례로 환경보호부문의 법들로서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동강오염방지법, 바다오염방지법, 국토환경보호단속법 등이 있는데 이가운데서 부문기본법은 환경보호법이다. 교육부문의 법들로서 교육법, 고등교육법, 보통교육법, 교원법, 교육강령집행법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부문기본법은 교육법이다.

부문기본법을 잘 만드는것은 부문법체계를 완비하는데서 선차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 것은 부문기본법이 해당 부문법체계에서 기초를 이루는것과 관련된다.

부문기본법을 정책적으로 잘 만드는데서 조문들을 실무적으로 나서는 세칙적인 문제들은 서술하지 말고 원칙적인 문제들을 반영하여 무게있게 서술하는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부문기본법의 품위를 보장하고 부문법체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 는 요구이다.

부문기본법에 원칙적인 문제보다도 실무적으로 나서는 세칙적인 문제들을 많이 넣으면 원칙적인 문제가 살지 못하고 사업규정과 같이 되여 최고주권기관의 법문건으로서의품위가 떨어진다. 부문기본법에 세칙적인 문제들을 넣으면 시기마다 자주 수정하여야 하므로 부문법체계의 안정성보장에도 불리하다. 부문기본법이 채택되려면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만들게 되는것만큼 부문기본법에 실무적으로 나서는 세칙적인 문제들은 넣지 않아도 된다. 결국 부문기본법에는 해당 부문의 사회관계와 관련한 보다 원칙적인 문제들을 뚜렷이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부문기본법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문기본법은 실무적으로 나서는 세칙적인 문제들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속에서 그대로 집행하기 곤난한 경우가 있다. 부문기본법을 구체적인 정황에 맞게 집행하자면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문기본법이 사람들의 행동을 실지로 규제하는 힘을 발휘할수 있다.

부문기본법이 채택되면 그에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제때에 만들어야 한다.

부문기본법이 채택되여 나간 다음 그것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법과 규정, 세칙이 인차 따라서야 부문기본법을 실제로 집행할수 있기때문이다.

부속되는 규정과 세칙들을 제때에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을 채택공포하는것과 동시에 그 집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을 내는것이다. 이렇게 할수 없는 경우에는 법을 채 택공포한 다음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그 집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을 내야 한다.

부속되는 규정과 세칙들을 제때에 만들도록 감독통제하기 위하여 법이 채택공포된다음 그 시행을 위한 규정이나 세칙을 늦어도 언제까지 채택공포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백히 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법이나 규정이 채택공포된 다음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들을 제때에 만들지 않음으로써 법의 집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을 법적으로 추궁할수 있다.

부문기본법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문기본법에는 보통 여러개의 법들이 따른다. 이런 법들은 부문기본법보다 더 구체 적으로 사회관계를 규제한다. 때문에 부속되는 법들은 부문기본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규정은 법보다, 세칙은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법을 실무적으로 집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규정을 내오는것만큼 규정은 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례로 법에서 《중앙무역지도기관》이라고 표현한것을 규정에서는 보다 구체화하여 《대외경제성》이라고 표현하여야 한다. 다른 실례로 어떤 법에서 《내각 위원회, 성을 비롯한 행정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이라고 표현하였다면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는 내각규정에서는 그속에 어떤 중앙기관들이 포함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렬거하여야 한다.

규정은 법보다 구체성을 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전국의 모든 부문, 모든 지역에서 집행하기 위한것이다.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칙을 낸다. 그러므로 세칙은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 어야 한다.

실례로 로동법과 로동규률규정에서 규제하고있는 8시간로동제를 상업부문과 철도부문, 석탄공업부문 등에서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각 부문의 세칙에서 자기 부문의 실정에 맞게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하는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래야자기 부문의 특성에 맞게 8시간로동제를 정확히 집행할수 있다.

이처럼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들고 제재규범을 구체화하여 사람들이 법의 통제에서 빠져나갈수 있는 틈이 없도록 하며 부문기본법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을 구체적으로 만드는것은 법을 규제력있게 만들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법작성에서 이러한 요구들을 철저히 지켜 법을 규제력있게 만듦으로써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법, 규제력